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27
----------	---------

제출연월일: 2021년 3월 일
제출자: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2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확정되어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부 문구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부 문구 개정(안 제2조제2호)

- “담배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입법예고(2021. 2. 19. ~ 3. 11.)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 심사대상 미해당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을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담배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없는 한 이 조례가”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고·검사결과”를 “보고·검사 결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u>는 「<u>담배사업법 시행규칙</u>」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u>담배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u>를 말한다. <p>제3조(<u>적용범위</u>)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u>없는 한 이 조례가</u>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7조(지도·감독) ①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② 구청장은 제1항의 <u>보고·검사결과</u>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 <u>조례</u>는 「<u>담배사업법 시행규칙</u>」 제7조제4항-- ----- ----- ----- -----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u>기관 또는 단체</u>----- -----. <p>제3조(<u>적용 범위</u>) ----- ----- ----- ----- <u>있는 경우를 제외하고</u> <u>는 이 조례에서</u> --.</p> <p>제7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② ----- <u>보고·검사결과</u> ----- ----- ----- -----.</p>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지역경제과장 김 강 수

(담당: 행정9급 연은비 / ☎ 2600-6367)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2022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확정되어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부 문구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일부 문구 개정(안 제2조제2호)
 - “담배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를 “기관 또는 단체” 로 변경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와 관련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 가 번 호	2021 - 6				
자 치 법 규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이경민
입안주무부서	지역경제과	통보(조치)일		2021. 3. 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서울강서006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지역경제과		
	담당자명	연은비	전화번호	02-2600-636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2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지역경제과)	2022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확정되어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부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입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3월 08일 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 지역경제과장 귀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